

## ○건축의 개념정의 - 법제104조제9호

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‘건축’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또는 이전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번 개정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지방세법상의 건축으로 인용하면서 종전의 증축 및 개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.

## &lt;법 제104조의 제9호&gt;

9. 建築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을 말한다.

## ○개수의 개념 도입 - 법제104조제10호

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‘개수’라는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전 지방세법에서 개축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대수선과 시설물(승강기, 20kW이상 발전시설, 난방용보일러, 에어컨, 금고, 교환시설,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, 변전·배전시설 등 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)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.

## &lt;법 제104조의 제10호&gt;

10. 改修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大修繕과 建築物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.

## ○건축물의 범위 - 영제75조의2

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 이번 개정으로 열수송관, 송전철탑(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·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),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(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)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, 추가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.